

—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,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은 삭제함(안 제2조, 제4조 내지 제7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5조 내지 제26조)
- 나.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여 건설임대의 경우 종전 60㎡까지 감면되던 것을 149㎡로 확대하고, 매입임대의 경우 85㎡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(안 제11조)
- 다.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,000분의 3에서 1,000분의 1.5로 변경함(안 제14조)
- 라.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함.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법」 제7조·제9조·제180조·제181조·제188조, 「임대주택법」 제2조·제12조,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9조,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74조, 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
- 경상북도 재정과-1703(2005. 1.27)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

- 경상북도 재정과-6028(2005. 4.28)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

5. 검토의견

-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규정은 삭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